

정 관

푸른꿈학원 - 2014. 2. 18
예 산 과 - 4782(2013.5.6)
예 산 과 - 3862(2012.5.8)
교육지원과 - 7565(2010.06.29.)
교육지원과 - 2097(2008.03.05.)
행 정 과 -13978(2006.11.21.)
행 정 과 -12089(2006.10.09)

학 교 법 인 푸 른 꿈 학 원

학 교 법 인 푸른꿈학원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평화교육, 평등교육, 생명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중등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푸른꿈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푸른꿈고등학교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865번지에 둔다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경하고 변경된 사항은 14일 이내에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변경된 정관이 법령에 위반되어 도교육감에게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도교육감에게 보고 한다.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에 기재한 재산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이 법인의 재산 중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③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법령과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규칙에 의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익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학교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다음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집행한다.

④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회계년도 종료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계의 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법인 및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부속명세서 포함)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결산서(부속명세서, 감사보고서 포함)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안에 각각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①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그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한다.

② 이 적립금은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3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3 절 삭제<2006.10.00>

제14조 ~ 제19조 삭제<2006.10.00>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2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이사 11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학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2.감사 2인

제2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절반으로 한다.

- 1.이사 4년
- 2.감사 2년,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2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이사로 선출될 수 있다. 다만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겸할 수 없다.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제23조의1 (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3명으로 한다.

제23조의2 (개방이사의 선임)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

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3조의 3 (추천위원회) ①추천위원회는 푸른꿈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3인

2.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③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장의 선임과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5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령 및 이 정관에 정한 직무를 수행하며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6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수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후임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8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29조 (임원의 임무) ①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임무를 게을리 하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1.법령 또는 이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
- 2.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반되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3.학사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경우.

제31조 (임원에 대한 실비변상)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이 수행한 직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 2 절 이 사 회

제32조 (이사회 의 구성 및 기능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1.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4.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 5.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 6.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 7.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8.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람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3조 (이사회 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춰진 시설에서 회의에 참석할 경우 참석인원으로 판단하고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4조 (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련된 사항
-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

되는 사항

제35조 (이사회 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 대행하는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회의록에는 출석한 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의 1(이사회 회의록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8조 (이사회 운영규정)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제39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인에서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설립목적을 활성화하고, 당해 학교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푸른꿈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40조~제50조 삭제<2012.5.00>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51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관련 문화사업
2. 출판 관련사업
3. 건물 임대사업
4. 농장경영사업
5. 임야조립 및 관련사업
6. 기타사업

제52조 (수익사업체의 경영) ① 법인은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따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체의 설립, 운영 또는 관리인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53조 (해산)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라북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라북도교육감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55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전라북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56조(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하 ‘교장’이라 한다)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단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교장 이외의 교원은 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 법인은 특성화고교의 본래적 취지를 이루기 위해 교사 정원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성화 과목 교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⑤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교장에 임명될 수 없다.(단, 재임 중인 교장은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⑥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임용을 제한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재직 교원도 당연 면직한다.

제57조 (교원의 임명) ① 교장을 제외한 교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장이 교원의 임명을 이사회에 제청하기 위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이 정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8조 (교원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59조 (기간제교원) ① 교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후임자의 보충이 필요할 때에는 그 기간중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가운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③ 기간제교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 2 관 신분보장

제60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만8세 이하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구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외국 근무를 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제61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6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60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6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6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학위 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6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60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60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60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60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

서 연장할 수 있다.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2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6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④ 교원이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임명권자는 해당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 제63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60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60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64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명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임명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불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명권자는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에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향상 또

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64조의2 (명예퇴직) 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법을 준용하여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사항은 이사회의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제65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의2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의 교원정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학교의 장은 임기전이라도 제1항에 의한 교원 정년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66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67조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 인사위원회

제68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9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교의 장이 이사회에 제청하는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학급, 학과의 개폐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된 교원이 있을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사항
5.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0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으로 전체교 사회에서 추천된 5~7명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71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2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3조 (인사위원회의 간사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의사록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이 서명, 날인한다.

제74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75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교원징계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3인의 교사 및 이사장이 임명하는 2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76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7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8조의1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

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78조의2 (위원의 기피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8조의3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9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0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1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81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8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의사록에는 위원에 출석한 위원들이 서명, 날인하고 자기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제83조 (운영세칙)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사 무 직 원

제84조 (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이하“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5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적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85조의2 (정년) 일반 직원의 정년 및 정년연장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법을 준용한다.

제85조의3 (대우 사무직원의 선발) 대우 사무직원의 선발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되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5조의4(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근속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중 퇴직예정일 현재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 시행에 필요한 절차, 자격, 요건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5조의5(특별승진) ① 정관 제58조의 4에 의거 명예퇴직을 하는 자는 근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승진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6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 (보수) 사무직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 (신분보장) ①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9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 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 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 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4절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90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푸른꿈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91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 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 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93조 (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4조 (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5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96조 (회의개최 등) ①회의는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분쟁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 (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8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9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00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1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102조 (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과를 두며, 과장은 이사장의 임면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고 등 학 교

제103조 (교장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4조 (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정 원

제105조 (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 8 장 보 칙

제106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107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8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생 략 -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2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1명
일반직계 1명	6급(주사)	1명

별표 1 학교 일반직원 정원(푸른꿈 고등학교)

총 계		3명
일반직계	6급	1명
	9급	2명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2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 ②(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감사뿐만 아니라 개방이사도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 ③ 제5조는 2012년 7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이 법 시행 후 최초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④ 제33조, 제39조, 제40조~제50조, 제56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